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무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814

발의년월일: 2019년 8월 5일

발 의 자:김종무 의원 (1명)

찬 성 자:이태성, 노승재, 이광성, 문병훈,

이정인, 김경우, 이상훈, 이병도,

고병국, 박상구, 신정호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급여,임대료 등의 조합 운용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피해와민원이 다수 발생함
- 현행 법령상, 조합해산 시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총회 미 개최 시 벌칙조항이 없어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음
-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고 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(안 제22조)
- 나.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(안 제24조의2)
- 다.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함(안 제75조)
- 라.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8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및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
-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4조의2(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) ① 시장은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,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제7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8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- 3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
- 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조합정관에 정할 사항) 영 제22조(조합정관에 정할 사항) ----제38조제17호에서 "그 밖에 시·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8. (생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 <신 설> 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 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 집 일정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(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<신 설> 의 권고 등) ① 시장은 이전고시 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 으로,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 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 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의 보고 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 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 공지원자(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) 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 <신 설>

개 정 아

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--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 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 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 한 지원

| 제86조(자료의 제출) 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 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 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
-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현 행	개 정 안
	<u>부 칙</u>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
	한다.